

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안내안

- '21.3.30,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-

I 사업 개요

- (목적)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지역아동센터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인력 추가 배치 지원
- (지원대상) '21년도 운영비 지원(예정) 대상 지역아동센터
- (지원금액) 지역아동센터 24,201백만 원
 - * 지자체 경상보조(보조율 서울 30%, 그 외 시도 50%)
- (지원내용) 돌봄인력 1명당 월 급여 2,020천원*
 - * 8시간 최저임금(182만 2,480원) 및 4대 보험료(10.86%)
- (지원기간) 근무 시작일부터 최대 6개월('21.12월 말까지)
- (지원방식) 돌봄인력 추가 지원을 신청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관할 지자체 별로 지원대상 선정

II 지원 절차

① 수요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·통보

- 1차 수요조사(시도, '21.3월) → 가내시(복지부, '21.3월) → 사업계획 통보(복지부, '21.3월) → 2차 수요조사(시도, '21.3~4월)

② 국고보조금 교부

- 확정내시(복지부, '21.4월) → 국고보조금 교부신청(시도, '21.4월) → 국고보조금 교부(복지부, '21.4월)

③ 지원대상 선정

-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지원대상 선정 및 센터 별 지원규모 확정
(시군구, ~21.4월)
- 센터 당 1명씩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시·군·구청장이
시설규모, 긴급돌봄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대 2명까지 지원

④ 채용 및 지원

- 종사자 공개모집(시설, '21.4월~) → 채용보고(시설→시군구, '21.4월~)
→ 인건비 지원(시군구, 21.5~12월 중, 근무시작일부터 6개월)

Ⅲ 인력 채용 및 교육

① 모집방법

- 설치자(대표자)는 해당 시설 홈페이지, 지자체 홈페이지, 워크넷(work.go.kr), 복지넷(bokji.net),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(www.w4c.or.kr) 등 2곳 이상의 사이트 등에 15일 이상 채용공고한 후 시설 내규 등에 따라 채용
- 15일 이상 공개모집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, 15일 이상 재공고 실시

② 자격기준

- (공통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5조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(지역아동센터) 기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
 -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,
 -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,
 - ③ 유치원,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

③ 채용 및 근로조건

- 시설의 기본운영시간(8시간) 동안 상근해야 함
- 「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」의 인건비 지원연령 상한 기준을 준수해야 함
- 시설의 법정 종사자 수 산정시 한시 지원 대상 돌봄인력 수는 제외됨
- 설치자(대표자)는 본인이 설치신고한 시설에 한시 지원 돌봄인력으로 지원 불가
- 설치자(대표자)는 종사자 채용시 근무시작일 이전까지 시·군·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

4 종사자 교육

- (교육내용) 종사자 아동권리 및 법정 의무교육 과정으로 구성

연 번	교육구분	교육과정명	교육운영기관	교육 인정 시간	비고
1	종사자 아동권리 (중 택2)	지역아동센터에서의 아동권리교육	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(https://edu.kohi.or.kr)	3시간	다함께돌봄 센터 제외
		아동, 권리를 말하다	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(https://edu.kohi.or.kr)	3시간	
		사례로보는 아동복지실천현장에서의 인권	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(https://edu.kohi.or.kr)	3시간	
2	법정 의무교육 (중 택1)	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 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(2021년)	서울시평생학습포털* (https://sl.seoul.go.kr) 또는 경기도지식캠퍼스 (https://www.gseek.kr)	1시간	
		(아동학대 예방)공통기관용(신고의무자 +공공부문 종사자)아동학대 예방교육	중앙교육연수원** (https://www.neti.go.kr)	2시간	
3	법정 의무교육	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	개인정보보호 포털 (https://www.privacy.go.kr)	3시간	

- (교육시간) 온라인 교육 10시간(6개월 근무 기준)
- (수강방법) 종사자 개인별 교육운영기관 홈페이지 내 교육과정
개별 수강 후 수료증 제출(근무시작 후 2개월 내)
- (교육이수 관리) 종사자 개인단위로 관리함
 - (지역아동센터) 종사자는 교육이 완료되면 교육이수 여부 확인
증빙서(수료증 등)를 시설에 제출